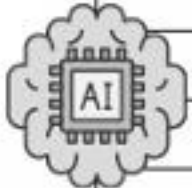


☆☆☆  
2025년 세제개편안

#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



• 국가전략기술 **AI분야 세부기술** 및  
사업화시설 추가 

- 
- ① 생성형 AI 기술
  - ② 에이전트 AI 기술
  -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
  -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
  - ⑥ 인간중심 AI 기술



•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 
세액공제 

웹툰콘텐츠 제작비용\*에 대해  
소득세·법인세 10% 세액공제  
(중소기업 15%)

\*인건비, 저작권료, 프로그램 비용 등



•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
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정 → 고용유지 시 2~3년차에 더 높은 공제

|     |     | 1인당 공제액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| (단위:만원)     |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구분  |     | 중소기업(3년)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중견기업(3년)    |     | 대기업(2년)     |     |
|     |     | 수도권           |       | 지방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|
|     |     | 현행            | 개정    | 현행            | 개정    | 현행          | 개정  | 현행          | 개정  |
| 우대* | 1년차 |               | 700   |               | 1,000 |             | 500 |             | 300 |
|     | 2년차 | 1,450<br>(3년) | 1,600 | 1,550<br>(3년) | 1,900 | 800<br>(3년) | 900 | 400<br>(2년) | 500 |
|     | 3년차 |               | 1,700 |               | 2,000 |             | 900 |             | -   |
| 기본  | 1년차 |               | 400   |               | 700   |             | 300 |             |     |
|     | 2년차 | 850<br>(3년)   | 900   | 950<br>(3년)   | 1,200 | 450<br>(3년) | 500 | -           | -   |
|     | 3년차 |               | 1,000 |               | 1,300 |             | 500 |             |     |

\* 청년(15~34세)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근로자 등





• **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 
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 
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**



14~45% 세율

-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적용요건<br>(①and②) | ①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<br>②배당성향 40% 이상 or 배당성향 25% 이상<br>+ 직전 3년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 |
| ②대상소득            | 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결산배당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적용세율            | (2천만원 이하) 14%, (2천만원~3억원) 20%, (3억원 초과) 3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• **투자·상생협력  
촉진세제 개편**



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 
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환류대상           |       |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지출액 | (좌동)+배당 |
| 기업<br>소득<br>비율 | 투자포함형 | 60~80%*            | 65~85%  |
|                | 투자제외형 | 10~20%**           | 20~40%  |

\*시행령에서 70%로 규정 | \*\*시행령에서 15%로 규정





• **고향사랑기부금**  
세제지원 확대

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 
**세액공제율 상향**

15% → **40%**

• **지방이전기업** 세제지원 제도 개선

**3년 연장**(~'28.12.31.)



공장·본사 **이전 기업**에 대한  
**세액감면의 대상·기간 확대\***

\* 수도권,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



**투자고용 수준에 따른**  
**감면한도\* 설정**

\* 지방 투자누계액의 +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 
70% 1인당 1,500만원  
(청년 서비스업 2,000만원)

아시아문화중심도시, 금융중심지 등  
• **지방 경제산업 특구**  
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



**3년 연장**(~'28.12.31.)





• 신용카드 등  
소득공제 기본공제  
한도 확대



기본한도 자녀당  
**50**만원 상향  
(최대 100만원)



단,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 
자녀당 25만원 상향  
(최대 50만원)

• 초등 1~2학년  
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**신설**



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 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
•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 
대상주택 확대

**무주택 세대주**

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7%  
5,500만원 초과 ~ 8,000만원 이하 15%



| 구분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          | 세대주<br>(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)        | 부부 각각 공제 허용                   |
| 주택<br>(면적기준) | 85㎡ 이하<br>(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㎡) | 3자녀 이상인 경우<br>지역구분 없이 100㎡ 이하 |
| 한도           | 연 1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부합산 연 1천만원                   |





지역사랑상품권  
업추비 손금 확대

3년 연장('28.12.31)



지역사랑상품권  
지출금액

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 
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

추가한도  
2배 상향 10% → 20%



경영악화로  
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 
세부담 완화



직전 3년  
평균수입금액  
대비 50% 이상 감소  
↓  
20% 이상 감소

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



수입  
기준

연간 8천만원 → 1억 400만원 이하



## •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



중복조사 걱정 줄인다!  
사전통지서에  
적힌 항목은  
한 번 조사로 끝!



## •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

| 조사통지 기한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| 개정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일반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       | 조사 15일 전 | 20일 전 |
|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|          | 7일 전  |
|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* 사전통지 기한   | 신설       | 당일통지  |

\*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## •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

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·심판청구 등을  
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

**고충민원\***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

\*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



## • 법인세율 '22년 수준으로 환원



| 과세표준(억원)    | 종전  | 현재  | 개정안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~ 2         | 10% | 9%  | 10% |
| 2 ~ 200     | 20% | 19% | 20% |
| 200 ~ 3,000 | 22% | 21% | 22% |
| 3,000 ~     | 25% | 24% | 25% |

## • 증권거래세율 '23년 수준으로 환원



## •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





## • 한시적 지원 종료



- 임시투자세액공제
-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

## •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

3년 연장(~'28.12.31)



과세표준  
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 
특례세율 상향



## •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

거주자가  
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 
국외전출일에  
양도소득세 과세

해외주식 포함





• **외국법인 연락사무소**

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



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 
**현황자료 미제출** 시 또는 **거짓제출** 시 과태료 부과



• **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**



2년 내 체납액을 50% 이상 납부한 경우

감치 실익이 없거나

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 
체납한 경우 등

